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0가단51311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미영

피 고 1. B

2. 주식회사 C

3. D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담당변호사 장선연

변 론 종 결 2021. 9. 8.

판 결 선 고 2021. 10. 20.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대출원리금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대출잔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한 2018. 12. 29.부터 2020. 7. 8.까지는 각 연체이율란 기재 비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같은 표 기재 근보증한도란 기재 각 금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C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에게 인천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지급받을 배당금 지급채권 63,541,210원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가. 피고 D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B에게 인천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지급받을 배당금지급채권 120,000,000원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G(이하 ‘G’)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 B는 G의 대표이사로서 G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같은 목록 근보증한도란 기재 각 금원을 한도로 한정근보증 약정을 하였다.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각 대출금 산정기준일은 순번 ① 대출의 경우 2018. 8. 18., 순번 ② 대출의 경우 2018. 6. 24., 순번 ③ 대출의 경우 2018. 6. 26.이다).

나. 피고 B와 G, 피고들 사이에서 2018. 5. 2. 피고 B가 피고 D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금전소비대차약정과 함께 피고 B의 피고 D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와 G의 피고 C(이하 '피고 C')에 대한 구매대금채무의 담보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0,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을 해주며, 그 설정비용 및 부대비용은 B가 부담한다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피고 B와 피고들 사이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피고 D은 2018. 5. 4. 79,630,000원, 2018. 5. 11. 66,100,000원, 합계 145,730,000원을 G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B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C,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인천지방법원 2018. 7. 9. 접수 제255930호)가 마쳐졌고,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D,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인천지방법원 2018. 7. 9. 접수 제255932호)가 각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이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3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인천지방법원 E), 2020. 4. 3. 피고 C에 대하여 63,541,21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2019. 5.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인천지방법원 F), 2020. 4. 16. 피고 D에 대하여 12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배당표에 기한 배당금 수령을 금지하는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인천지방법원 2020카단1025, 2020카단1026호)을 신청하여 위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마. 피고 B는 2018. 8. 17. 서울회생법원 2018회단100133호로, G는 2018. 7. 18. 같은 법원 2018회합100140호로 각 회생신청을 하였고, 2019. 4.경 위 각 회생절차에 관하여 회생폐지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대출원리금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대출잔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산정기준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8.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0. 7. 8.까지는 각 연체이율란 기재 비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다투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같은 표 기재 근보증한도란 기재 각 금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피고 B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전에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사해행위

가) 채무초과 여부

갑 제8, 12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H장에 대한 2020. 10. 27.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일인 2018. 7. 9.을 기준으로 피고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시가 3억 원 상당의 평택시 I아파트 J호가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약 4억 6,000만 원 정도였던 사실,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177,800,000원, K에 대한 15,143,600원, L에 대한 100,000,000원, M회사에 대한 34,200,000원, N은행에 대한 102,000,000원, 110,000,000의 각 대출채무, O은행에 대한 115,500,000원의 대출채무, P회사에 대한 224,428,777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557,539,000원, M회사에 대한 34,200,000원의 각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피고 D에게 각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B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융통받은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는 2017. 12. 21. 용인시 처인구 Q 소재 2층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B가 피고 D으로부터 G의 계좌로 145,73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61,000,000원을 거래처인 R 주식회사에 지급하고, 원고에게도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27,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입금된 돈 중 일부가 G의 거래처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에 G의 신규 매출이 있었다거나 그 밖에 경영상태가 개선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위 각 금액 합계 88,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G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G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자금융통을 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D이 2018. 5.경 145,730,000원을 G에 송금한 이후인 2018. 6. 19.과 2018. 7. 12. G가 피고 C에게 합계 119,735,134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들은 위 송금이 피고 C가 G로부터 매입거래를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4,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지급원인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약 2개월 후인 2018. 7.경 G와 피고 B가 회생신청을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제1부동산에 2018. 1. 25.과 2018. 6. 8., 이 사건 제2부동산에 2018. 6. 8. 각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인 2018. 5. 중순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점, ④ G와 피고 C 사이에 2016. 2.경부터 2017. 12.경까지 약 2년간 매월 지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다가(총 거래대금 205,766,000원) 2018. 1. 이후 거래가 중단되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이후인 2018. 7.경부터 다시 거래가 재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들은 피고 C의 G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 채권이 167,401,050원이라고 주장하는바, 미수대금 상당액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태에서 미수대금에 상응하는 액수의 차입금을 추가로 대여하였음은 쉽게 수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근

저당권설정계약이 피고 B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피고 B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이때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피고 C에게 63,541,210원을, 피고 D에게 120,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피고들이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 채무자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박나리

별지 1

목 록

순 번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대출잔액(원)	이자(원)	대출원리금 합계(원)	연체이율	근보증한도액(원)
1	2013. 3. 26.	210,000,000	31,066,527	4,590,527	35,657,054	연 11.58%	37,800,000
2	2016. 5. 27.	50,000,000	50,000,000	10,349,826	60,349,826	연 11.78%	60,000,000
3	2018. 3. 20.	100,000,000	90,000,000	18,462,628	108,462,628	연 11.46%	120,000,000

별지 2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S에 있는 T아파트 U동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36층 아파트

1층 385.1077㎡

2층 357.7898㎡

3층 내지 23층 449.332㎡

24층 356.9594㎡

24층 125.992㎡

25층 내지 36층 449.33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S 대 36411.7㎡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제11층 V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8507㎡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36411.7분의 50.1582

2.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S에 있는 T아파트 U동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36층 아파트

1층 385.1077㎡

2층 357.7898㎡

3층 내지 23층 449.332㎡

24층 356.9594㎡

24층 125.992㎡

25층 내지 36층 449.33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S 대 36411.7㎡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제36층 W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8507㎡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36411.7분의 50.1582 팔.

1) 주문 제2의 가.항 및 제3의 가.항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실제 체결일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 5. 2.이다.